

회의록

수지초등학교

회의명	2026학년도 제 1차 의무교육관리위원회						
회의주관부서	교무기획부						
회의개최일시	2026년 월 일 (수) 16:00~16:30						
회의 장소	수지초등학교 교무실						
참석자	○○○(위원장)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(간사)						
안건	2026학년도 의무취학 대상 유예 심의						
내용	발언자(직위)	발언 내용 (개조식)					
	○○○ (위원장)	○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전체 위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으므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○안전에 대한 간사의 심의사항 설명 바람					
	○○○ (간사)	○심의 안건은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(취학의무의 면제 등)에 의거하여 의무취학 아동에 대한 유예 심의사항이며,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 바람. ○2024학년도 의무취학 유예 심의 대상자: ○학년 ○반 홍길동 ○2024학년도 의무취학 유예 심의대상자 신원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					
		순	성명	성별	생년월일	미취학사유	신원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
		1	홍길동	남	16.01.01	미인정 해외출국	-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확인 결과 홍길동(남) 학생은 모와 함께 출국 이후 입국사실 없음 -홍길동 보호자(부)의 유선연락 및 직접 대면상담 결과 해당 학생의 출국사실을 확인하였으며, 홍길동과 보호자(모)가 동 반 출국하여 현재 국내에 거주 하지
	○○○ (위원장)	○해당 학생의 결석 사유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담임교사의 설명 바람					
담임교사 (○○○)	○자세한 결석사유 조사 보고서는 별도 안내자료 참고 바람 ○2025학년도 3월 4일(화) 새학기 첫 날 등교일 해당학생의 결석 확인 후 홍길동과 보호자(모)에게 여러 차례 유선 연락하였으나, 수신이 불가능한 상태임 ○보호자(부)와 여러 차례 유선연락하여 상담한 결과 현재 해당 학생과 모는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이며, 아버지 역시 홍길동 및 어머니와 연락 두절 상태임 ○어머니의 지인들과 중국 가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홍길동과 모의 중국 현지 소재 및 안전 확인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, 확인할 수 없었음						

		•아버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서에 홍길동과 모의 신변 및 소재확인을 위해 의뢰한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출국사실을 확인하였으나, 경찰서의 경우 가족이 출국한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실종 및 가출로 볼 수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•현재 홍길동은 출국 상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학교에 등교할 수 없어 보호자(부)가 홍길동의 유예를 신청함
	○○○ (위원장)	•본 심의 안전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각 위원들의 의견 제안 바람
	○○○ (위원)	•의무취학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관계 증명 확인 결과 해당 아동과 보호자가 가족 관계임을 확인함
	○○○ (위원)	•출입국관리 사실증명 확인 결과 해당 아동은 보호자(모)와 출국 이후 입국한 사실이 없으며, 해당 아동의 유예 신청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됨
	○○○ (위원)	•의무취학의 유예 및 면제 심의 시 반드시 보호자가 해당 의무취학 대상 아동을 동반하도록 되어 있으나, 현재 홍길동의 경우 모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여 보호자인 아버지의 진술 확인 결과 및 출입국사실증명, 담임교사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유예 승인이 타당함
	○○○ (위원)	•현재 해당 학생(홍길동)은 출국 상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학교 등교 및 출석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의 유예 신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유예 승인이 인정됨
	○○○ (위원)	•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, 유예를 위한 증빙자료 확인 결과 이상 없음
	○○○ (위원)	•학생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등 미취학 학생 관리와 의무취학 관리의 철저를 기하고, 위 의무취학대상자의 유예 승인에 동의함
	○○○ (위원장)	•2024학년도 의무취학 유예대상자 심의에 대한 전체 위원의 의견 제안 바람
	전체 위원	•유예 결정에 모두 동의함
결과	결정 사항	•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, 학적처리 매뉴얼 지침에 의거하여 2025학년도 의무취학 대상 유예 심의 결과 해당 학생의 취학의무 유예를 결정함
비고		